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8. 12.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표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에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명확화

나. 해당 동 구의원 고문으로 위촉,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지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위촉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조례 유효기간(2020년 6월 30일) 및 시범실시 동(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 명확화(부칙)

3.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입법예고 : 필요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로, “설치·운영에”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동”을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으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을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에 속한 사람

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지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 중 “필요한”을 “간사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있도록주민총회”를 “있도록 주민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 관계 공무원”을 “해당 동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u> <u>설치·운영 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u> <u>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u>설치·운영에</u>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 ----- ----- <u>설치 및 운영에</u>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u>시범실시</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u>민관협력에</u> 관한 사항을 <u>정하기</u>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u> 수립하는 -- <u>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u> 관한 --.</p>
<p>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p>	<p>제4조(기능) ----- -----</p>

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자치회관의 운영 및 그 밖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5.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에 속한 사람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이미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그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⑥ (생략)

<신 설>

⑦ (생략)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지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0조(위원의 대우) -----

----- 간사인 -----

-----.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3.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주민총회) ①·② (생략)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제7조 -----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도록 주민총회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해당 동

관계공무원 -----
